

##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론

###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Restorative Justice.

장원석 \_제주대학교

Chang Won Seok \_Jeju National University

#### 초록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총체적 인권 침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민주정부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행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과거사 청산 방식이 제시된다. 하나는 사법적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다. 종종 전자를 응보적 정의로, 후자를 회복적 정의로 표현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다.

이 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식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긍정론과 비판론을 검토한 후,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한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체제이행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이상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언을 행한다.

□ 주제어: 진실화해위원회, 회복적 정의, 데스몬드 투투, 아파르트헤이트

#### Abstract

Determining how to deal with the gross human rights abuse committed by the past regime is one of the most serious responsibilities that the newly-elected democratic government faces.

There are two contrary ways of dealing with the past, concerning transitional justice. One is to refer to the criminal court, the other is to rely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ivity. Generally, we call the former retributive justice and the latter restorative justice.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s a typically successful model of truth and reconciliation which emphasizes restorative justice.

This paper reviews the pros and cons about the South African way of dealing

with the past and confirms the legitimacy of the commission while identifying the existing problems and limitations. Lastly, I suggest the ideal model fo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times of system transition.

□ Key word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storative justice, Desmond Tutu, apartheid.

## I. 머리말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총체적 인권 침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민주정부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과거사 청산 방식이 제시된다.<sup>1)</sup> 하나는 사법적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다. 종종 전자를 응보적 정의

1) '이행기의 정의는 루티 타이텔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Ruti G. Teitel, *Transi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이 용어는 주로 과거사청산의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국제 이행기정의센터에(ICIJ)에 따르면 '광범위한 인권탄압의 잔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도입된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 조치들로 정의된다. 이병재, "이행기의 정의와 인권" 『국제정치논총』, Vol.55, No.3 (2015), 89. 이병재는 이행기의 정의를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기에, 과거의 인권침해를 다루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도입된 조치들로 정의 한 후 구체적 내용으로서 처벌적 조치(재판과 정화), 정보적 조치(진실위원회), 배상적 조치, 사면의 네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한편 이영재는 과거사청산 모델로서 정의모델(형사재판), 진실화해모델, 배상모델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청산방식은 정의모델에 해당된다.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Vol.12, No.1 (2012), 137. 이재승은 과거사청산모델을 정의모델, 진실화해모델, 혼합모델, 망각모델, 신원모델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혼합모델은 형사법정과 진실화해위원회를 병행하는 방식이고 신원모델은 기념사업에 치중하는 낮은 수준의 정의구현 방식이다. 이재승, 『국가범죄』 (2010), 31-37. 타이텔에 따르면 이행기의 정의는 세 개의 국면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국면은 뉘른베르크 법정으로 상징되는 종전 후 전범재판이며, 두 번째 국면은 제3의 물결로 표현되는 1980년대의 진실위원회의 등장이고, 세 번째 국면은 형사적 정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다. 이에 따라 정의 개념 역시 형사적 정의로부터 회복적 정의, 배상적 정의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Ruti G. Teitel,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16 (2003), 69-94. 이처럼 이행기의 정의를 해결하는 구체적 조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류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필자는 남아공진실화해위원회를 고찰함에 있어서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대립이 주요한 논쟁 주제가기에 편의상 사법적 처리와 진실화해위원회의 두 가지 방법론을 부각시켰다.

(retributive justice) 혹은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로, 후자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로 표현한다.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관용과 화해의 방식을 통해 진실규명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다.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관용과 평화의 정신을 보여준 넬슨 만델라와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성공리에 수행한 투투 대주교는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다. 영향력있는 정치인이나 이에 준하는 인물들의 경우 노벨평화상은 과거의 업적에 대한 평가일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과연 응보적 정의보다 우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있고, 또한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반대의 견해에 따르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이며 여타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가 않다. 혹자는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몇 가지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 비판론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사 청산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화해의 효과 역시 피상적이라고 판단한다.

이 글은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이행기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을 행하려 한다.

논문의 구성은 우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화 과정을 정리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도입 과정과 조직 및 활동 등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특유의 평화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우분투(ubuntu)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투투의 저술<sup>2)</sup>에 입각하여 일련의 성공담을 경청할 것이다. 다음에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를 비판하는 논리들을 원칙의 문제인가 적용상의 문제인가 두

2) 테즈먼드 투투, 홍종락 옮김, 『용서없이 미래없다』 (서울: 흥성사, 2009).

개의 범주를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들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남아프리카 방식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긍정론과 비판론을 종합하여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한편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체제이행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이상적 운영방안에 대해 제언을 할 것이다.

## II.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의 역사

17세기에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케이프 지역에 상륙하였고 네덜란드인들이 남아프리카로 이주를 시작한다. 네덜란드인들은 스스로를 농민이란 뜻의 보어인(Boer)이라 불렀고 이들은 현재 남아공 백인들의 선조가 된다. 한편 19세기 초가 되자 아프리카 최초의 토착민 통일국가인 줄루(Zulu) 왕국이 건설되었다. 뒤늦게 영국도 이 지역의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어 줄루 전쟁(1879-80)을 승리로 이끈 후 1887년 줄루 왕국을 정복하였고 다이아몬드와 금광 채굴권을 놓고 보어인들과 충돌한다. 영국의 케이프 총독 세실 로즈는 보어 전쟁(1899-1901)을 통해 보어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데 성공한다. 1910년 영국은 인근 지역을 합병하여 대영제국의 특수자치령으로서 남아프리카연방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연방의 국내정치는 최대 백인세력인 보어인들이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한다. 온건 노선의 보어인 세력과 영국계 주민들의 제휴관계 속에서 연합당(United Party)이 조직되어 수권정당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1934년 보어인들의 배타적 권익을 앞세우는 국민당이 창당된다.<sup>3)</sup> 국민당은 캘빈교 근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극단적 인종주의를 추구하였고 보다 온건한 백인 정치세력과 종종 갈등을 빚기 시작한다. 남아프리카연방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측에 가담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들은 나치와 친교

3) 정확하게 말한다면 당의 명칭은 ‘순수한 국민당(Purified National Party)’이다. 1914년 창당된 국민당은 1934년 제1당인 남아프리카당과 통합하여 연합당을 만들었다. 이에 반발한 국민당 잔존세력들이 ‘순수한 국민당’을 조직하였고 이들 세력이 1948년 국민당 정부의 모체가 되었다.

를 맺었으며 정부 여당인 연합당 역시 이 문제로 내분을 겪은 후 와해된다.

1948년 총선거에서 승리한 국민당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들을 공포하며 극단적 인종주의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분리(segregation)라는 의미의 아프리칸스어(Afrikaans: 공용 네덜란드어)로서 인종적 분리에 따른 발전을 추구한다는 국민당의 인종주의 통치이념을 표상한다.<sup>4)</sup> 아파르트헤이트는 식민지 지배의 유산이며 사실상 영국 통치시절부터 시작되었으나 국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양상을 보였다는 차이가 있다. 백인, 유색인종, 인도인, 흑인 네 인종 사회를 분리시키는 이들 정책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종간 결혼을 금지시켰던 잡혼 금지법(1949년), 인종별 거주를 법제화한 집단지역법(1950년), 유색 인종에게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1951년), 흑인의 신분증 휴대를 의무화한 통행법(1952년), 교통 및 공공시설을 인종별로 분리시킨 시설분리법(1953년), 인종별 교육을 실시한 반투교육법(1953년), 인종별 국가건설을 규정한 반투자치촉진법(1959년) 등 30 여개의 인종차별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1년 국민당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비판적인 영국정부에 반발하여 영연방을 탈퇴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선언하였으며 1990년까지 국민당의 독점 체제가 유지되었다.

1923년 흑인사회는 인종차별에 맞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조직하였으며 처음에는 비폭력적인 투쟁을 시도하였다. 초기의 저항은 백인사회에 대해 동등한 권리보장을 호소하는 것이었으나 1950년대가 되자 불복종운동으로 투쟁방식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1960년 샤프빌 대학살(Sharpville massacre)<sup>5)</sup> 이후 흑인들의 투쟁조직이 불법화되자 ANC의 지도부는 인근 국가로 망명하였으며 만델라는 투옥되었고 이후 무장투쟁과 테러활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1976년의 소웨토(Soweto) 폭동<sup>6)</sup> 이후 ANC의 무장투쟁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그것은 밀

4) 'separate but equal' 이라는 19세기 말 미 대법원의 짐 크로우(Jim Crow)법 합헌 판결과 유사한 논리를 보여준다.

5) 통행법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비폭력시위를 경찰이 발포하여 6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영국정부가 이 사건을 비난하자 남아프리카연방은 공화국을 선언하고 영연방을 탈퇴하였다.

6) 아프리칸스어 강제교육에 대한 소웨토 흑인 학생들의 거부운동이 경찰의 총격으로 5백여명이

고자 차단과 자체의 기율확립을 목적으로 내부적인 테러까지 감행하게 된다.<sup>7)</sup> 1980년대에 들어서 국민당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화책을 선보이기도 하였으나 백인 극우단체와 국민당 강경파의 압력으로 사태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다. 1986년 ANC는 전면적인 인민전쟁을 선언하였고 도시테러가 자행되었다. ANC는 일종의 망명정부로서 소련과 친교를 맺었으며 사회주의적 강령을 채택하였고 집행부 다수가 공산당에 가입하였다.<sup>8)</sup>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해체되기 시작한다. 동독의 붕괴 이후 민주화의 요구가 더욱 증폭되었으며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9년 대통령에 취임한 드 클르크는 아프리카민족회의와 기타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규제조치를 해제하고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며 평화협정을 시작하였다. 테러조직의 책임자로서 28년간 수감되었던 만델라는 협상을 주도하며 또 다른 저항조직인 인카리당의 불만을 무마하고 보복없는 정권교체를 성취하였다.<sup>9)</sup> 1993년 12월 임시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1994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되어 60%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드 클르크와 타보 음베키가 부통령이 되었다. 체제의 이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사법처리 하는 대신 진실화해위원회의 방식으로 사

---

사망하고 2천여명이 부상당하는 대규모 유혈참사로 이어진 사건이다. 유엔안보리에 의해서 비난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현재 이 날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 7) Alfred Allan and Marietjie M. Allan,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s a Therapeutic Tool,"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18 (2000), 466.
- 8) 김광수 외, 『남아프리카공화국 들여다보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80. ANC는 남아공 공산당과 60년 넘게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985년 미국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ANC 집행위원 30명 중 21명이 공산당원이었다.
- 9) 코르벨과 말레는 남아공의 체제이행과정을 한스 켈젠의 개념을 원용하여 실제적 혁명(substantive revolution)으로 설명한다. 남아공의 민주화 과정은 집권세력이 지배권을 포기했지만 이후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현직을 유지했으며 새로운 정권 창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과정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을 통해 혁명의 이상이 실현되었다. Drucilla Cornell and Karin van Marle with Albie Sachs, *Albie Sachs and Transformation in South Africa: From Revolutionary Activists to Constitutional Court Ju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5), 1-8.

면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sup>10)</sup> 협상 참가자들은 뉘른베르크식 재판과 일괄사면 또는 국민적 망각이라는 극단을 모두 거부하고 타협안으로서 개별적 사면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고백과 사면의 교환을 대원칙으로 하는 과거사청산이 이루어졌다. 투투 대주교는 자신의 저서에서 백인정부 보안세력의 협조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하였으며 뉘른베르크식 승자의 정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진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면의 방식이 국가를 위해 인권사태 피해자들이 감수했던 불가피한 희생이었음을 인정하였다.<sup>11)</sup>

1994년 거국정부 출범당시 제1야당으로 새출발을 시작한 국민당은 이후 총선거에서 계속 참패하여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고, 2009년 선거결과 연합당의 후신이며 백인 온건세력인 민주동맹(DA)이 제1야당이 되고 줄루족의 인카라 자유당(IFP)이 제2야당이 되었다.

### Ⅲ.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

1992년 「민주주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연구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두 차례의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모델과 동유럽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방식의 취약점<sup>12)</sup>을 보완하여 대통령이 아닌 의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의 조직과 위원회의 증인소환권 및 관련자료 압수권 등이 결정되었다. 1995년 5월 만델라에 의해 서명된 ‘국

10) 인권운동가 출신의 헌법재판관인 알비 사스에 따르면 1988년부터 흑인 운동의 지도부는 진실위원회 모델을 지향하고 인권단체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 이유는 법률전문가들의 왜곡된 변론 등 사법적 접근이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으며 또한 체제범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사청산의 문제를 전통적 갈등해소 방식과 유사한 진실위원회의 역할에 기대하려 하였다. Bronwyn Leebar, "Legitimation or Judgement: South Africa's Restorative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Polity*, Vol.36, No.1 (October 2003), 33-37.

11) 테즈먼드 투투, 『용서없이 미래없다』, 71.

12) 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정당성의 제약을 받은 것, 조사 대상을 불법적 살인에 한정시킨 것, 증인소환권과 관련자료 압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민통합 및 화해촉진법'은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토대를 구성한 법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는 샤프빌 대학살이 벌어진 1960년 3월부터 만델라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994년 5월 10일까지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전모를 규명하고 법률적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하며 인권 침해의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보상조치를 하고 미래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안을 포함한 포괄적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임무로 부여받았다. 심각한 인권침해는 살인, 납치, 고문, 극심한 학대의 의미로 정의 되었고 해방투쟁과정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 역시 동일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사면위원회, 보상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정부는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 제단체에 대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99명의 명단이 제출되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면담과정을 거친 후 27명의 명단이 대통령에게 다시 제출되었고 최종적으로 17명의 위원이 임명되었다.

인터뷰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 추구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든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며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대주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sup>13)</sup> 위원들은 3개의 소위원회에 각각 배치되었다.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2만 여건의 증언을 채록하였고 이중 10%에 해당하는 2000여명이 증인으로 공청회에 출두하였다. 공청회 개최는 라틴아메리카 모델과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진실의 규명 외에도 최대한의 대중 참여를 통해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심리치유라는 추가적 의미도 갖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부위를 절개하여 신선한 공기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sup>14)</sup> 위원회는 특

13) 그러나 백인 사회는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아프리카민족회의에 호의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14) 앤드류 릭비 지음, 장원석 역, 『과거사청산의 비교정치학』 (서울: 온누리, 2007), 148.



히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백인사회 다수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방관자이며 수혜자로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업, 언론, 종교, 법조계 등 개별적 제도의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다수의 백인들이 얼마나 구조적 불평등의 혜택을 받았는지 혹은 체제의 불의에 대해 얼마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사면위원회는 가해자가 범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이 정치적 성격의 것으로서 개인적 악이나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극악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한해 사면을 결정하였다. 출석을 거부하거나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 기소가 예정되었는데 2003년 집계에 따르면 7,112명이 심사를 받았으나 1200명 정도만이 사면초치 되었다.<sup>15)</sup> 이 과정에서 후회나 가책의 표현, 혹은 용서의 요청 등은 요구되지 않았다. 부통령 타보 음베키를 포함하여 4백명 이상의 아프리카 민족회의 간부들이 사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이 정의의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자 투투 대주교가 위원회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위협을 한 후 전개된 상황이었다.<sup>16)</sup> 또한 사면위원회가 아프리카민족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일반사면을 결정하자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원에 항소를 하는 기묘한 사건도 있었다. ‘국민통합 및 화해촉진법’은 구체적인 범죄를 적시하지 않는 집단적 사면을 불허했기 때문이었다.<sup>17)</sup>

화해의 과정이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과를 받아내는 일 외에도 다소간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그것은 어느 정도의 원상회복과 사회적 개조를 의미한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 - 현금지급, 장학금 지원, 의료혜택, 기념비 건립 등 - 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15) 이남희, “치유와 정의의 기억만들기: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청산과 보상,” 『역사와 담론』 제44집 (2006), 240.

16) 앤드류 리비, 『과거사청산의 비교정치학』, 153. ANC는 반인륜범죄에 대한 투쟁을 동일한 잣대로 단죄해서 안된다고 반발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 여부가 아닌 전쟁에 있어서 정의(jus in bello)를 문제삼았다. Bronwyn Leebaw, "Legitimation or Judgement: South Africa's Restorative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Polity*, Vol.36, No.1 (October 2003), 44; *TRC Report*, vol.1, 66의 재인용이다.

17) 앤드류 리비, 『과거사청산의 비교정치학』, 165.

피해자로 지정된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1인당 330달러의 임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최고 3830달러에 이르는 최종보상금을 6년 내로 지불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보상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건의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모두 서술하였으며 총체적인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 국가보안기구뿐만 아니라 흑인운동단체 역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프리카민족회의는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보고서 출간금지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기조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본질과 체계적 불의를 고발하는데 집중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수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혜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였다. 보고서는 철저한 제도개혁 외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흑인사회에 대한 구조적 폭력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였다.<sup>18)</sup>

진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면이라는 원칙을 견지했던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정의 추구의 기회를 박탈당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백인 세력 역시 그것이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무시한 마녀사냥임을 주장하였다. 투투는 백인 사회 대다수가 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지 않은 사실과 인카타 자유당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나 남아공의 과거사청산 모델은 기소의 위협과 사면의 약속을 적절히 구사하여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체제로의 평화로운 이행을 성취하는데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용과 화해를 요체로 하는 과거사 청산방식이 별다른 국민적 저항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남아프리카의 고유한 문화인 우분투(ubuntu)의 전통과 투투 대주교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18) 그러나 2000년 UNDP에 제출된 보고서는 남아공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인종 간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김영수, “남아공 시민사회와 진실화해위원회,” 『역사비평』 (2014년 11월), 113.

우분투는 줄루족의 용어로서 인간다움(humanness)을 의미하며 아프리카의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개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본래 신의 피조물로서 관대함, 친절성, 배려심 등 좋은 심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공동체적 속성이다.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누구도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즉 공동체 내부의 분쟁과 갈등은 관용과 화해의 정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분투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집단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합의지향적 방식으로 갈등의 해소를 추구하는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적 전통이며 그것은 평화주의 철학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분투의 정신은 절도, 재산권 분쟁, 결혼 송사, 살인과 전쟁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된다. 투투 대주교는 과거사청산에 즈음하여 아프리카의 가치가 일응 기독교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용서없이 미래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나 일부 백인 기독교 성직자들은 우분투의 개념 속에 내포된 조상숭배의 논리를 우상숭배로서 배척하기도 하였다.

프레토리아 대학 마상고 교수에 따르면 우분투의 개념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에 즈음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자유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잊혀졌던 아프리카의 고유한 가치를 다시 부활시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sup>19)</sup> 한편 케이프타운 대학의 티모시 무리티는 우분투 전통의 요체는 공동체의 참여에 있다고 보고 이를 우분투 거버넌스라고 표현하고 있다. 갈등적 사안의 해결에 이해관계 당사자 외에 공동체가 개입을 한다는 것이며 특히 원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리티는 우분투 방식의 남아프리카 갈등해소 기제로서 인쿤들라(Inkundla)/랙코틀라(Lekgotla) 포럼을 이야기 한다. 공동체의 사회적 단합을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실의 규명을 위해서 마을 원로들의 주재하에 자리가 마련되며 사람들은 사건을 경청한다. 이

19) M. J. S. Masango, "African Spirituality That Shapes the Concept of Ubuntu," *VERBUM et ECCLESIA*, 27(3) (2006), 932.

자리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행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며 제언을 할 수 있다. 원로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법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는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촉구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면이 행해지고 화해를 달성하여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한다.<sup>20)</sup>

1995년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정의의 기준으로 우분투의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1996년의 이른바 소위 AZAPO 재판<sup>21)</sup> 역시 살해된 흑인운동가 스티브 비코(Steve Biko)의 미망인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함으로써 우분투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 건설이 더 중요함을 증명하였다.<sup>22)</sup>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법부는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법재판 과정에 사전적인 조정과 중재를 실시할 것이 권장되며 그 요체는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아프리카적 전통을 수용하는데 있다. 우분투 정신이 생각하는 회복적 정의는 '죄는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하지는 않는 것'이며 브레드웨이트는 이를 '수치심을 안겨주고 사회적 재통합을 지향하는 것'(theory of reintegrative shaming)으로 정리한 바 있다.<sup>23)</sup>

청문회가 진행되는 2년동안 투투는 흑백 양쪽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방패막이가 되어 무지개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려 하였다. 투투는 수시로 우분투의 논리를 강조했으며 또한 흑인 투쟁단체들을 설득

20) Timothy Murithi, "Practical Peacemaking Wisdom from Africa: Reflections on Ubuntu,"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1(4) (2006), 30-32.

21) AZAPO는 Azanian People's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1978년에 설립된 흑인운동조직이다. 아자니아는 고대 로마 시대에 남아프리카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나탈대학 의과대학생이었으며 흑인의식운동의 지도자였던 스티브 비코(1946-1977)의 정신이 이 조직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AZAPO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사면행위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22) Bronwyn Leebaw, "Legitimation or Judgement," 41-42.

23) Theo Gavrielides and Grace Loseby, *The Wind of Change: Comparative Lessons for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Africa and the United Kingdom* (London: RJ4ALL Publications, 2014), 28. John Braithwaite,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89), 54-65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하여 이들이 고해성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해방투쟁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테러에 대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뜻을 박았다. 또한 공청회의 운영과정에서도 모든 주체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고서 역시 양측의 책임을 모두 지적하였다. 백인 사회가 위원회의 활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투투의 공정한 위원회 운영방식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흑자는 투투의 카리스마를 위원회의 최고 성공요인으로 들기도 하였다. “위원회의 중심부에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인 투투 대주교가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상징했던 인물은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이라는 깃발아래 검은 성복을 입고 십자가를 든 투투 대주교였다. 사실 위원회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는 구원, 화해, 용서, 치유를 강조했던 대주교 개인의 목소리가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정의와 징벌의 거친 언어가 무시되었다는 것이다.”<sup>24)</sup>

#### IV. 논쟁과 평가

투투는 자신의 저서에서 남아공 헌법이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진보적 헌법이며 진실화해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고 전 세계가 위원회의 활동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또한 공청회와 사면신청 과정에서 가해자들이양심의 가책을 토로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여준 비범한 아량에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화해를 성취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본다. 가령 언론인 로젠버그는 위원회가 궁극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한다. 사면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체제의 안정에 기여했는지 모르나 미래의 시민사회에 대해 공권력 불신이라는 문제를 안겨주었다.<sup>26)</sup> 비록 일부 인사가 후회하는 태도

24) 앤드류 리비, 『과거사청산의 비교정치학』, 155.

25) 데즈먼드 투투, 『용서없이 미래없다』, 332.

26) Stanley Elizabeth, "Evaluat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Journal of Modern*

를 보이고 용서를 요청한 사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해자의 다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신념을 고집하는 현실 속에서 화해와 치유는 빈말에 불과하게 되었다. 중간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에 대한 사면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하였으며 또 한 번의 고통을 맞보아야만 했다.<sup>27)</sup>

## 1. 비판적 시각

### 1) 원칙의 문제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를 비판하는 첫 번째 논리는 과거사 청산 과정에 적용시킬 원칙의 문제로서 회복적 정의를 거부하고 응보적 정의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결국 정의와 화해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의 우위 혹은 정의를 통한 화해를 주장하는 논리이다.

영국 혈(Hull) 대학의 법학교수 게리 존스톤은 회복적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개념정의를 모호하다는 것이다. 관용과 치유, 사회적 통합, 신뢰성 회복 등 광범위한 이상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목표 간의 서열, 구체적 방법론, 성과 평가의 기준 등이 분명치 않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효과가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피해자의 심리치유나 사회적 통합의 효과는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하다. 셋째, 범죄의 재발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평균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형벌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만든다. 넷째, 심각한 범죄는 처벌하는 것이 정의이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의 보완에 불과하다. 다섯째, 민주

*African Studies*, 39(3) (2001), 536.

27) 희생자 가족의 한 어머니는 살인자에 대한 사면청문회에서 자신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식을 잃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대중언론의 보도는 상처의 치유를 돕기보다는 희생자의 상처와 고통을 자극하고 악화시켰다. 다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화해의 과정은 구체적인 현실과 괴리된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위원회가 화해를 성취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앤드류 릭비, 『과거사청산의 비교정치학』, 158.

국가의 정의는 법정에서 국가가 판결한다. 회복적 정의는 분쟁의 해결과정에 이해관계 당사자의 관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성과 비례성을 상실한다. 여섯째, 회복적 정의의 도입은 범죄자 처벌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형벌제도를 사회전반에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sup>28)</sup>

메릴랜드 대학 공공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크로커는 투투가 뉘른베르크식 해결을 거부하는 이유로서 다음의 두 가지 도덕적 논변을 들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처벌은 결국 복수를 의미하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처벌은 사회적 조화의 회복이라는 화해의 목표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크로커는 투투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응징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복수와 전혀 성격이 다르다. 크로커에 따르면 복수는 신중함이 결여되고 자기만족적인 반면, 응징은 절제되고 비례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집단적 갈등의 경우 복수는 집단적 책임전가의 양상을 보이지만, 사법적 절차에 따른 응징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한다. 둘째, 처벌없는 화해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공동체가 우분투의 정신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 피해자 집단의 분노를 자극하여 공동체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크로커는 오히려 재판을 실시했더라면 사회적 치유나 화해의 성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반문한다. 셋째, 면책의 문화는 범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는 1999년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평화협정에 의해 사면을 받았던 반군지도자 상코(Sankoh)가 후일 다시 학살을 재개한 사건을 지적한다. 정의의 화해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이 공정한 사법처리는 국민의 분노를 완화시킴으로써 신생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법이며 칠레 정부가 뒤늦게 피노체트의 면책권을 박탈하고 25명의 책임자들을 체포하였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것이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었음을 강조한다.<sup>29)</sup> 따라

28) Gerry Johnstone and Daniel W. Van Ness ed,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598-614.

29) David A. Crocker, "Punishment, Reconciliation, and Democratic Deliberation," in *aking Wrongs Seriously: Apology and Reconciliation*, ed. Elaza Barkan and Alexander Karn 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70-71.

서 그는 사법재판과 진실화해위원회를 동시에 추진하되 후자의 역할은 확보된 자료를 사법당국에 제공하거나 혹은 기소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크로커는 우분투의 논리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노한 피해자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편 프린스턴대 정치학 교수인 구트만과 하버드대의 톰슨은 진실과 화해를 명분으로 정의를 희생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의 물음을 던진다. 그들의 결론은 첫째, 정치적 안정의 목표가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타의 가치는 정의의 실현과 더불어 추구되어야 하며 도덕성을 결여한 미래사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아파르트헤이트의 희생자 다수는 관용보다 응징을 원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인권운동가 스티븐 비코와 그리피스 므상지 가족의 절규를 사례로 소개한다. 가족들은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반대한다. 진실뿐만 아니라 정의를 원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회복적 정의를 통한 피해자 심리치유의 효과도 의문시 된다. 케이프 타운의 비영리단체인 트라우마 센터의 조사는 청문회 증언자의 50-60%가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은 심리적 상처의 치유가 아닌 악화를 초래하였다. 넷째, 용서는 미래에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구트만과 톰슨은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가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결론을 내린다.<sup>30)</sup>

## 2) 적용상의 문제

한편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정의의 구현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다시 남아공진실화해위원회

30) Amy Gutmann and Dennis Thompson, "The Moral Foundation of Truth Commissions," in *Truth V. Justice: The Morality of Truth Commissions*, ed. Robert I. Rotberg and Dennis Thomps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31.



자체의 제도적 결함 혹은 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과 후속정부의 보고서 제안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다.

미시간 법대의 리웰린과 호우세는 위원회가 보여주는 다음의 두 가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는 일부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인권위원회와 사면위원회가 별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상호간 교감을 통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면과정에 가해자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방식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sup>31)</sup>

영국 옛지 힐 대학의 범죄학교수인 엘리자벳 스탠리는 위원회의 잠재력이 정부당국과 백인사회의 무성의로 크게 훼손되었다고 본다. 진실의 규명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나아가 억압과 불평등의 체제 개혁을 목표로 했던 위원회의 작업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첫째, 위원회에 불참했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기소에 실패하였다.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 예산상의 한계와 국가적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들며 변명하였다. 둘째, 위원회 보고서는 1만 8천명의 피해자에 대해 일정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건의하였는데 정부(타보 음베키 대통령, 1999-2008)는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였다. 셋째,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아파트헤이트 체제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수혜를 입었던 기득권 사회의 책임문제이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언론과 사법부, 기업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였지만 이들 집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흑인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화해와 통합은 한갓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흑인의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 정책 조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백인 사회 역시 비협조적이다. 스탠리는 이 모든 문제가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의지부족에 기인한다고 진단하

31) Jennifer J. Lewellyn and Robert Howse, "Institutions for Restorative Justice: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49(3) (1999), 387-388.

었다.<sup>32)</sup> 헤이너 역시 15개 국가의 진실위원회를 검토한 후 진실위원회의 제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슷한 맥락에서 개탄한 바 있다.<sup>33)</sup>

## 2. 긍정적 시각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원칙의 문제로서 회복적 정의를 채택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지적한 후 위원회의 활동 역시 부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들 논자들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리웰린과 호우세는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들은 회복적 정의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적 사안의 경우 사법적 정의는 개인적 책임을 규명하기가 힘들다. 형사법정의 속성상 살인 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개인적 관여를 입증 못하면 하급자나 하수인만 처벌되는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한다.<sup>34)</sup> 또한 가해자와 방관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자리를 같이하여 사안을 공론화해야만이 체제개혁 나아가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공개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으로 선출하였으며 투명한 방식으로 논쟁과 토론에 임했다. 두 사람은 위원회가 정의의 부재가 아니라 이행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강력한 사례라고 결론을 내린다.<sup>35)</sup>

32) Elizabeth Stanley, "Evaluat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9(3) (2001), 537.

33) Priscilla B. Hayner, "Commissioning the Truth: Further Research Questions," *Third World Quarterly*, 17(1) (1996), 28.

34)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갈등 연구 책임자인 로트버그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진실위원회의 출범 당시 이미 부분적으로 화살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고위책임자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석방됨으로써 응보적 정의의 실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 바 있다.” Robert I. Rortberg, "Apology, Truth Commissions, and Intrastate Conflict," in *Taking Wrongs Seriously: Apology and Reconciliation*, ed. Elaza Barkan and Alexander Kar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49.

35) Jennifer J. Jewell and Robert Howse, "Institutions for Restorative Justice," 388.

요하네스버그 위트워터스랜드 대학의 철학교수인 루시 얼래스는 남아공진실위에 대해서 그것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표준적 모델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가해자에게 후회와 사과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보상책임도 생략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조세의 형식이나 기업의 현금 등 방식을 통한 지원이라는 보고서 제안을 묵살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남아공 진실위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상황적 요인이다.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 논변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세력의 협조가 없었다면 진실의 규명도 평화로운 체제 이행도 불가능하였다. 둘째, 사법처리 방식으로는 상급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힘들다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지도자는 면책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수혜자에 대한 단죄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형사재판의 방식은 큰 도움이 안 된다. 얼래스는 회복적 정의가 정의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보적 정의와 다른 방식의 처벌을 행하는 대안적 정의임을 강조한다. 범죄자의 고백을 역사에 기록하여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 역시 중대한 처벌방식의 일환이다.<sup>36)</sup> 그리고 그것은 현행 형사제도의 한계인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보완하는 일면이 있다. 즉 아파르트 체제하에서 수혜를 입은 다수의 백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회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기소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얼래스는 위원회의 조치 속에는 처벌의 도덕적 욕구에 상응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를 포함한다.<sup>37)</sup>

ANC 주도의 신생 정부가 뉘른베르크식 정의를 추구했다라면 사태는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로버트 로트버그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민주

36) 투투 역시 범죄를 자백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인물들이 사실은 살인가담자였고 혹은 구금자들을 정기적으로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이웃주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충격이었다. 테즈먼드 투투 자음, 홍종락 옮김, 『용서없이 미래없다』 (홍성사, 2009), 65.

37) Lucy Allais, "Restorative Justice, Retributive Justice, and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9(4) (2012), 332.

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원회의 활동은 진실규명과 개인 및 사회의 치유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가능하였고 공개적인 치욕을 안겨준다는 응징적 일면이 있었다. 그는 다만 화해의 성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고 말한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백인과 흑인의 3분의 1이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으며, 국민의 3분의 2가 위원회로 인해 인종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특수한 종류의 유죄협상(plea bargain)로 이해한다.<sup>38)</sup>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미래의 진실위원회 모델이 될 것이며 여타의 분쟁지역으로 보급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정치학 교수 브로닌 리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회복적 정의론의 채택은 즉자적 폭력행위의 진실을 뛰어넘어 구체제의 총체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야스퍼스가 말하는 정치폭력 수혜자들의 도덕적 책임을 제기하는데 기여하였다.<sup>39)</sup> 위원회는 개인적 책임 외에도 사회 제조직의 공모관계를 밝혀냈고 또한 빈곤이나 기회의 박탈 등 체제의 장기적 효과도 규명하였다. 그는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인선정에서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견지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호주 대학교 심리학과 알프레드 알란과 마리엣 알란은 원칙론으로서 회복적 정의론을 지지하지만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그들은 응보적 정의가 이행기의 평화정착을 어렵게 하고 생존자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법재판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은 가해자의 특정화가 어렵고 순교자를 양산함으로써 기존의 신념을 강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생존자의 피해 회복을 도와 사회적 통합을 성취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위원회가 인권문화의 창달에 기여했으며 위원회의 보고서는 완전한 진실규명에 성공한 것이 아니지만 기존의 오류를 제거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38) Robert I. Rotberg, "Truth Commission and the Provision of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Truth V. Justice: The Morality of Truth Commissions* ed. Robert I. Rotberg and Dennis Thomps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17.

39) Bronwyn Leebaw, "Legitimation or Judgement," 30.

그러나 두 사람은 남아공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정이 가해자에 대한 사면과정보다 지체됨으로써 불만을 야기시킨 점, 그리고 국가가 보상을 책임지고 개인적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그들은 사면위원회가 가해자와 생존자의 회동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감정의 교류를 통한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의 보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의 성공사례를 참조할 것을 조언하였다.<sup>40)</sup> 두 사람은 희생자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평가하였다. 공청회의 증언은 단기적으로 심리치유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것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공청회에 대한 일부의 비판과 논쟁이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투투와 보레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치유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의학계의 반응도 카타르시스의 단기적 효험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재트라우마, 즉 고통의 재현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화해효과는 경험적 연구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한다.<sup>41)</sup> 그들은 또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만 초점을 두어 화해의 성취에는 덜 진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피력한다.

## V. 맺는 말

국제사회에서 악명 높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민주주의의 세계화 물결 앞에서 결국 와해되었다. 그리고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카민족회의는 체제이행의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

40) Alfred Allan and Marietjie M. Allan,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s a Therapeutic Tool," 474.

41) Ibid., 464.

하였다. 그들은 과거사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라는 국가적 과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흑인과 백인 사회 내부로부터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이후 민주화의 과정은 순조로웠고 남아공 모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선진적 사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 회복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 혹은 남아공 방식이 회복적 정의의 이상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다.

비판자들은 회복적 정의의 논리가 사실상 정의의 관념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하였고 정치적 과도기일수록 오히려 사법적 처리를 분명히 해야만 민주주의의 정착 나아가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sup>42)</sup> 반면 회복적 정의의 옹호론자들은 재판의 방식을 취할 수 없었던 현실적 여건 외에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다수의 가치들을 강조하였다. 한편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사면의 절차는 중대한 흠결로 지적되었다. 결론에 즈음하여 필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적 정의 대신 회복적 정의의 방식을 취한 남아공 정부의 선택은 적절했다고 본다. 존재의 차원에서 고찰할 때 남아공의 체제이행은 백인정부의 협력을 필요로 했고 사법적 정의를 고집할 경우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투는 응보적 정의를 추구하여 국가를 재속에 파묻히게 만드는 허무한 승리를 구가할 수는 없었다고 회고하였다.<sup>43)</sup> 헌팅턴은 제3의 물결론은 개진하며 민주화 과정의 유형을 기존 엘리트가 변화를 주도하는 경우, 반대 세력이 변화를 주도하는 경우,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이 타협을 통해 성취하는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남아공의 민주화는 마지막 유형에 해당되며 이리

42) 한국의 경우 법학자인 이재승이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그는 과거사청산 과정에서 책임자처벌은 핵심적 요소이며 남아공 방식의 회복적 정의론은 국지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용서와 사면은 민주시민의 헤게모니 하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고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체코의 하벨 대통령 같은 민주 지도자가 사면을 행할 경우에 문제는 완화된다. 이재승, “이행기의 정의,” 『법과 사회』 제22권(2002), 47-74; “화해의 문법,” 『민주법학』 제46호 (2011), 123-158.

43) 테즈먼드 투투, 『용서없이 미래없다』, 32.

한 방식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보았다. 기소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sup>44)</sup> 다른 한편, 당위의 차원에서 볼 때 응보적 정의론과 회복적 정의론은 각각 나름대로의 대의를 확보하고 있다. 전자는 정의의 실현과 유사범죄의 재발 방지를, 후자는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공동체의 회복과 제도개혁 등의 다목적 가치를 주장한다. 사실 어느 편이 더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가치판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방식을 절충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를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의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sup>45)</sup>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은 심사과정을 통해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 절충적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다만 처음부터 사법처리와 진실위원회 회부라는 이원적 역할분담 과정에 돌입하지 않고 진실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기소조치라는 순차적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후속정부의 의지에 따라 융두사미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사면조치는 가해자의 신분을 공개하고 범죄행위를 역사에 기록하여 개인적 수치감을 안겨주는 응징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필자는 생각건대 체제전환 과정이 민주세력의 일방적 승리로 종료될 경우 절충적 모델이 좋아 보이나,<sup>46)</sup> 만일 타협의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면 남아공 모델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소가능성을 문서로 규정해두고 후일을 기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중남미의 사례는 시간이 흐른 후 이전의 사면조치를 무효화하고 선별적으로 사

44)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231.

45) 가령 시에라리온과 동티모르는 유엔주도의 법정과 진실화해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여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병행한 사례이다. 르완다 역시 국제임시법정을 설치한 후 4년이 지나 진실화해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통합 모델을 옹호하는 시드니대학의 람부른드는 사법재판소와 진실위원회의 동시적 운영이 약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 한 후 이들 국가의 토착적 재판 관행(가령 르완다의 *gacaca*나 동티모르의 *nahe biti* 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성공적 접근방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Wendy Lambourne,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 Building after Mass Viol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3 (2009), 36-37.

46) 헌팅턴도 이러한 경우 중화위직 관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231.

법치리를 시도하는 또 다른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말은 바 임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방식을 통해 심각한 충돌 없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청산하였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악명 높았던 국민당 세력은 사실상 퇴출되었고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국민적 화해라는 중요한 목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일부 흑인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회복적 정의의 내재적 한계일 수도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문제의 근원을 진단해 볼 수도 있다. 즉 사면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사과의 표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화해를 위해서는 명예회복이나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인권유린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실현된다면 화해의 가능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만델라의 남아공 정부는 백인 사회의 반발을 우려하여 사면과정에서 인권침해 책임자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고 결국 화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되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려면 공정한 방식으로 진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사면이라는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념적 요소가 개입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남아공의 경우 진실의 규명과 사면조치라는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sup>47)</sup> 가해자에 대해 사과의 표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유동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었는가하는 평가를 하게된다. 로트버그는 트라우

47) 물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진실의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스탠리는 기소의 위협과 사회적 체면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은 최선의 스토리만을 들려주는 전술적 성격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위니 만델라와 드 클러크 같은 거물들은 잔혹행위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토로를 거부하였다. Elizabeth Stanley, "Evaluat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39, No.3 (September 2001), 532-533. 한편 이그나티에프는 위원회의 역할을 과장하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위원회의 조사가 시중에 떠도는 다수의 풍문을 검증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Michael Ignatieff, "Overview: Articles of Faith," *Index on Censorship*, No.5 (1996), 113.



마을 겪은 사회가 화해를 성취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과를 행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규명의 결과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의해서 수용되어질 때 사과는 화해의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회복적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최고의 원동력은 사과를 행하는데 있다.<sup>48)</sup> 그러나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 투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백인사회는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였다.

셋째,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공요인으로 우분투의 정치문화와 투투 대주교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진실과 사면의 교환이라는 흑인운동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을 흑인사회가 큰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화해문화가 일정부분 작용을 했다고 보여진다. 강력한 공동체 문화의 존재는 갈등의 해소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적 요인 외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투투 대주교의 리더십이다. 투투의 카리스마와 균형 있는 현실감각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과 국민여론의 구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보복의 욕구가 팽배해질 수 있는 시점에서 투투는 희생자 집단에 대해 관용을 촉구하였고 흑인저항단체의 불법행위 역시 단죄하였다. 투투의 소신과 용기, 양식과 공정성은 백인사회의 저항심리를 무력화시켰고 진실화해위원회의 도덕적 권위를 배가시켰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공담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의 역할이 갈등해소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문제는 사면심사 탈락자와 불응자에 대해 기소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이는 후속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남아공 모델은 그 자체에 사법적 정의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의 과정이 보완되고 기소의 절차가 원칙대로 이행된다면 이행기의 정의 구현 방식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여진다. 중남미나 탈공산주의 국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시간이 흘러 체제가 안정되면 미흡한 과거사청산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재점화되는 경향이 있다. 헝가 엘쉬는 폴란드가 탈공산주의화 과정에서 보복을 금지

48) Robert I. Rortberg, "Truth Commission and the Provision of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47.

함으로써 체제이행에 기여했다는 평가에 대해 화해의 정치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 부담으로 되돌아오며 과거사청산의 문제는 권력투쟁의 수단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sup>49)</sup> 현재 폴란드 정치는 이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바웬사까지도 구공산세력과의 연루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상이한 인종집단간의 갈등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사 논의의 재개가 용이하지 않겠지만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의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과거사 청산과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의 적용가능성 여부의 문제는 또 다른 연구를 요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한다.<sup>50)</sup>

- ▶ Submitted : 2017. July. 21.
- ▶ Reviewed : 2017. August. 29.
- ▶ Accepted : 2017. September. 1.

49) Helga A. Welsh, "Dealing with the Communist Past: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Experiences after 1990," *Europe-Asia Studies*, Vol.48, No.3 (1996), 425.

50)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사법재판과 진실위원회를 동시에 운용하였다. 그러나 사법적 처벌은 최소화되었고(20여명만이 복역함) 진실위원회 역시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반면 정화(lustration)라는 인적 숙정작업에 착수하여 슈타지 비밀문서를 근거로 5만 5천여명(공적 부문 42,046명, 사기업 12,880명)을 해고하고 15년간 공직제한을 강제하였다. 이로 인해 ‘승자의 정의’ 논쟁이 초래되었다.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는 독일정부의 과거사 청산은 i) 개인적 차원에서 ii) 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 iii) 진실한 고백과 공개적 사과를 전제로 사면이 주어진다면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화해를 성취하여 새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모델을 연상케 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북한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는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통일 후 조화와 평화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고위간부집단에 대한 일반 사면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독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법재판을 최소화하고 문서공개와 진실위원회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의 방식이 아닌가 한다. 사면의 방식이나 정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장원석, “통일독일의 과거사 청산 일고,” 『정치와 평론』 14 (2014), 89-119 참조.

## References

- Allais, Lucy. 2012. "Restorative Justice, Retributive Justice, and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9(4). 331-363.
- Allan, Alfred, and Marietjie M. Allan. 2000.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s a Therapeutic Tool."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18. 459-477.
- Chang, Won Seok. 2014. "Dealing With the Past in Unified Germany."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Vol.14. 123-158.
- Cornell, Drucilla, and Karin van Marle, with Albie Sachs. 2015. *Albie Sachs and Transformation in South Africa: From Revolutionary Activists to Constitutional Court Ju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rocker, David A. 2006. "Punishment, Reconciliation, and Democratic Deliberation." Elaza Barkan and Alexander Karn ed. *Taking Wrongs Seriously: Apology and Reconcili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avrielides, Theo, and Grace Loseby. 2014. *The Wind of Change: Comparative Lessons for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Africa and the United Kingdom*. London: RJ4ALL Publications.
- Gutmann, Amy, and Dennis Thompson. 2000. "The Moral Foundation of Truth Commissions." Robert I. Rotberg and Dennis Thompson ed. *Truth V. Justice: The Morality of Truth Commiss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2-44.
- Hayner, Priscilla B. 1996. "Commissioning the Truth: Further Research Questions." *Third World Quarterly* 17(1). 19-29.
-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gnatieff, Michael. 1996. "Overview: Articles of Faith." *Index on Censorship* 5, 110-122.
- Johnstone, Gerry, and Daniel W. Van Ness ed. 2011.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im, Kwangsu et al. 2010. *Namapeurikagonghwagung deuryeodabogi*. Seoul: Hankuk

-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Center.
- Kim, Yong-su. 2014. "Civil society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outh Africa." *Critical Review of History* 11. 94-118.
- Lambourne, Wendy. 2009.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 Building after Mass Viol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3. 28-48.
- Leebaw, Bronwyn. 2003. "Legitimation or Judgement: South Africa's Restorative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Polity* 36(1). 23-51.
- Lee, Byung-Jae. 2015. "Transitional Justice and Human Rights: A Framework for Causal Effect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55(3). 85-121.
- Lee, Jae-seung. 2002. "Transitional Justice."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Vol.22. 47-74.
- \_\_\_\_\_. 2010. *State Crimes*. LP Book.
- \_\_\_\_\_. 2011. "A Grammar for Reconciliation: from the Viewpoint of Civic Politics." *Democratic Legal Studies* Vol.46. 123-158.
- Lee, Nam-hee. 2006. "Constructing memories of healing and justice: Dealing with the Apartheid past." *History and Discourse* 44. 237-261.
- Jewell, Jennifer J. and Robert Howse. 1999. "Institutions for Restorative Justice: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49(3), 355-388.
- Masango, M. J. S. 2006. "African Spirituality That Shapes the Concept of Ubuntu." *VERBUM et ECCLESIA* 27(3). 930-943.
- Murithi, Timothy. 2006. "Practical Peacemaking Wisdom from Africa: Reflections on Ubuntu."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1(4). 25-34.
- Rigby, Andrew. 2007. *ChangWonSeok yeog. Justice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violence*. Seoul: OnNuri.
- Rotberg, Robert I. 2000. "Truth Commission and the Provision of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Robert I. Rotberg and Dennis Thompson ed. *Truth V. Justice: The Morality of Truth Commiss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21.
- \_\_\_\_\_. 2006. "Apology, Truth Commissions, and Intrastate Conflict." Elaza Barkan

- and Alexander Karn ed. *Taking Wrongs Seriously: Apology and Reconcili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3-49.
- Stanley, Elizabeth. 2001. "Evaluat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9(3). 525-546.
- Teitel, Ruti G. 2000. *Transi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6. 69-94.
- Tutu, Desmond Mpilo. 1999.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New York: Doubleday.
- \_\_\_\_\_. 2009. HongJongRak yeog,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Seoul: Hongseongsa.
- Welsh, Helga A. 1996. "Dealing with the Communist Past: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Experiences after 1990." *Europe-Asia Studies* 48(3). 413-428.
- Yi, Young-Jae. 2012. "The Study on the Nature and Form in the Transitional Justice: Focusing on the Justice of Sympathy."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2(1), 121-151.